

第269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07年9月20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회계법안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1.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3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39.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40.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
4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청문경과보고

附議된案件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의장 제의) 3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길부·권선택·김재홍·김종률·김우남·박찬석·오제세·윤원호·이시중·장복심·정갑윤·조경태·최철국 의원 발의) 5
7. 국가회계법안(정부 제출) 5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6
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6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6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7
13.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7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7
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7
16.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7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7
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엄호성·박명광·유승민·이인기·이해봉·이영호·김태홍·안민석·안상수·배일도·

	강창일 · 박세환 · 최경환 · 박상돈 · 김명주 · 김재홍 · 박찬숙 · 김재경 · 심재덕 · 우제창 · 이강두 · 공성진 · 이강래 · 김영덕 · 이낙연 · 장영달 · 최인기 · 이호용 · 신상진 · 김효석 · 유선호 · 주승용 · 신국환 · 김영선 · 염동연 · 이계진 · 변재일 · 김성곤 · 한화갑 · 고조홍 · 김재원 · 한병도 · 한선교 · 강기정 · 김무성 · 최용규 · 이상배 · 조경태 · 조배숙 · 정희수 · 최규성 · 최구식 · 최재성 · 정중복 · 임인배 · 권오을 · 조승수 · 김정권 · 이병석 · 이인제 · 신중식 의원 발의) 9
21.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2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1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1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1
2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1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1
29.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 · 주성영 · 이해봉 · 엄호성 · 김태환 · 광성문 · 유승희 · 이인기 · 안병엽 · 김성조 · 공성진 · 이계경 · 김광원 · 이상배 의원 발의) 13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고조홍 · 김광원 · 김명주 · 김용갑 · 김우남 · 김재경 · 김충환 · 신상진 · 안상수 · 안영근 · 엄호성 · 윤두환 · 이상배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구 · 임인배 · 정의화 · 정희수 · 차명진 · 황진하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13
31.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 · 장복심 · 신학용 · 한광원 · 원혜영 · 김정권 · 김교홍 · 정장선 · 박상돈 · 강길부 · 변재일 · 신국환 · 문석호 · 주승용 · 양형일 의원 발의) 13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김정권 · 문학진 · 최규성 · 유승민 · 최병국 · 김재윤 · 채일병 · 정의화 · 이낙연 · 주성영 · 김중률 · 김효석 · 이계경 · 박상돈 · 오제세 · 유선호 · 고조홍 · 손봉숙 · 채수찬 · 임인배 · 김형오 의원 발의) 13
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양형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식 · 주승용 의원 발의) 13
34.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3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16
3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16
39.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 17
40.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8
4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청문경과보고 18
o	5분자유발언 19

(14시29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예결위 결과에 따라서 결산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전부 터 다루고 후에 예결위 결과에 따라서 그때 적의

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의장 제의)

(14시3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지난 6월 18일 정창렬 위원의 사임으로 꺾이된 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김삼웅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오늘 자 국회공고에 게재되었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성종 의원, 홍창선 의원, 서혜석 의원, 안민석 의원, 이성구 의원, 정문현 의원, 정진섭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직원들은 감표위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란 안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3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5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0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임채정 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득 투표수도 20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02표 중 가 140표, 부 54표, 무효 8표로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6항~제33항, 제35항 및 제36항은 예산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의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김혁규·강길부·권선택·김재홍·김종률·김우남·박찬석·오제세·윤원호·이시종·장복심·정갑윤·조경태·최철국 의원 발의)

(15시0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상돈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입니다.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방기업 출자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으나 형식적으로만 법인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악용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감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9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가회계법안(정부 제출)

(15시08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7항 국가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우제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회계법안은 중앙관서 등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도입하고, 이와 관계되는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의 수입·지출 등 현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국가회계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제정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제정안이 국고금관리법 중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문을 옮겨와 회계 관계 규정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조문들이 제정안의 다른 조문들과 상충되고 국고금관리법에 남게 되는 잔여조문들 간에 연관성이 없어지는 등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있어서 제정안 중 현금회계와 관련된 조문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안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 이외

에 재무회계 방식의 결산을 추가함에 따라 일부 결산 서류가 중복으로 작성, 제출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기금관리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도 통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회계처리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한 취지 등에 비추어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삭제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회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회계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9.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

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15시12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교홍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교홍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일부 원격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학교운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질관리와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원격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원격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게 하면서 교육여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학원을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원격대학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복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 구론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만 별도의 치과병원 설립법을 두고 있고 기타 국립대학은 근거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도 치과병원에 관한 독자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교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13.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16.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20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안명옥**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8건의 개정안은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각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면허·자격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그중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장품법, 약사법, 이상 2건은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법문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결격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문규정 방식도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해당 전문 자격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

본권과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명옥 의원 안과 이성구 의원 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현재는 사용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글 용어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명옥 의원, 이석현 의원, 장향숙 의원, 문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약품의 연구·개발, 의약품 제조 등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 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약품 유통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안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79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5인 중 찬성 181인, 기권 4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

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

표발의)(김춘진·엄호성·박명광·유승민·

이인기·이해봉·이영호·김태홍·안민

석·안상수·배일도·강창일·박세환·최

경환·박상돈·김명주·김재홍·박찬숙·

김재경·심재덕·우제창·이강두·공성

진·이강래·김영덕·이낙연·장영달·최

인기·이호웅·신상진·김효석·유선호·

주승용·신국환·김영선·염동연·이계

진·변재일·김성곤·한화갑·고조홍·김

재원·한병도·한선교·강기정·김무성·

최용규·이상배·조경태·조배숙·정희

수·최규성·최구식·최재성·정중복·임

인배·권오을·조승수·김정권·이병석·

이인제·신중식 의원 발의)

21.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2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0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센인 피해자를 위령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한센인 격리폭력사건의 용어정의에서 한센인 수용시설 및 입소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공권력 개입 여부가 불확실한 비토리섬 사건은 한센인피해사건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이 법의 시행시기를 하위법령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만성·난치성 질환에 관하여 특별히 한의약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안 제10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에 관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요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10조에서 이미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10조에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9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강기정**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형근 의원, 양승조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심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첫째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권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때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 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 둘째로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 보장 비용에 대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 서울은 50%, 지방은 80%로 국가 부담 비율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안한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40~90%의 범위 내에서, 시·도는 국가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30~70%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는 시·군·구의 재정 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토록 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5시4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정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정희수** 건설교통위원회의 정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금 보상에 따른 인근지역 지가 상승 등 부동산 불안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당초 토지소유자도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있어 보상액 산정 시에는 공고일부터 취득일 기간 동안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반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고,

넷째,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강도 높은 규제에 의하여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 미관의 창출 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건축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특별건축구역 내의 건축물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 결정 시 실시계획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방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 · 주성영 · 이해봉 · 엄호성 · 김태환 ·곽성문 · 유승희 · 이인기 · 안병엽 · 김성조 · 공성진 · 이계경 · 김광원 ·

이상배 의원 발의)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고조홍 · 김광원 · 김명주 · 김용갑 · 김우남 · 김재경 · 김충환 · 신상진 · 안상수 · 안영근 · 엄호성 · 윤두환 · 이상배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구 · 임인배 · 정의화 · 정희수 · 차명진 · 황진하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31. 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 · 장복심 · 신학용 · 한광원 · 원혜영 · 김정권 · 김교홍 · 정장선 · 박상돈 · 강길부 · 변재일 · 신국환 · 문석호 · 주승용 · 양형일 의원 발의)

3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 · 김정권 · 문학진 · 최규성 · 유승민 · 최병국 · 김재윤 · 채일병 · 정의화 · 이낙연 · 주성영 · 김종률 · 김효석 · 이계경 · 박상돈 · 오제세 · 유선호 · 고조홍 · 손봉숙 · 채수찬 · 임인배 · 김형오 의원 발의)

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양형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식 · 주승용 의원 발의)
(15시5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2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김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선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단순 불고지와 구별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토지가격 상승의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 도모 등을 위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07년 4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댐의 용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대책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 조성사업자와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시점을 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한시법인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의 장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66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4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김영숙** 여성가족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심재철 의원, 홍미영 의원, 손봉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부자복지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모·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아동의 정의에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던 것을 상향 조정하여 22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인바 법률안 내에서 일관성이 없이 표현되거나 표현상 자연스럽게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3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16시11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7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의용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정의용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7년 9월 19일 제269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은 199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동 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권능을 수락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 제21조는 특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는 고문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약 가입 당시에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난민 신청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제21조 및 제22조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론이 수락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남용의 우려와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 수락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를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서 1999년 채택되었고 2003년에 발효되었습니다—상기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운송구간별로 적용되는 협약이 서로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항공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

(16시16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9항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문헌 교육위원회의 정문헌 의원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에는 지난 36년간의 일본의 침략을 사실상 인정하는 “일제식민지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의 피동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3·1운동 등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우리 민족들의 피나는 항쟁이 독립운동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서술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권 회복 의지와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정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임시정부로부터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주체적 역사 인식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선조들의 대일항쟁 정신을 후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일제식민 통치시대”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을 고려시대의 대몽항쟁기와 같이 “대일항쟁기” “대일항쟁운동” 등의 표현으로 수정 내지 대체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6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2인으로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6시20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40항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 文姬**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문희 의원입니다.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7년 9월 18일 제269회 국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여성가족위원회안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화폐도안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2009년 발행 예정인 5만 원, 10만 원권 등 고액권 지폐의 초상인물로 10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로는 신사임당과 유관순 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시민사회에서는 조선시대 의녀로서 대표적인 여성 사업가로 인정받는 김만덕,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시인 허난설헌, 화가 나혜석, 최초의 여성 법률가 이태영 등을 신화폐의 여성 인물로 선정하자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만 원권, 5000원 권, 1000원권 화폐초상인물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으로 여성인물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군 이래 최초로 화폐초상인물을 여성으로 선정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부합하도록 하고 화폐에도 성별 다양성을 표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56인, 기권 9인으로서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 청문경과보고

(16시23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4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홍준**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에 대해 가족의 위장전입 등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개발과 보전의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환경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 관련 사항 등 크게 5개 항목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위장전입 등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련하여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후보자로서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의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새만금간척사업, 금정산 터널 문제 등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국책 사업의 경우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문제는 사업시행 초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집행상의 문제라고 답변하면서 마을버스·청소차 등 저속주행차량의 경우 일부 효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부착장치를 탈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팔당호 등을 현재 BOD로 관리하고 있는데 COD로 관리하여야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도 현재 55개에서 미국 수준인 98개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COD도 중요한 관리항목이므로 앞으로 COD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검사 항목도 다른 선진국이나 WHO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 주요현안에 있어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바뀐 입장에 대하여 후보자는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에는 확실히 반대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은 폐수무방류를 전제로 하여 구리공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면 상수원 보호 등 수질 문제, 생태 부문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와 관련하여 협상의 진척 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여 오염치유 정도, 오염조사 및 치유기간, 치유확인검사 등 SOFA 규정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환경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면 향후 5개월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수도권대기개선대책사업 문제, 하이닉스 공장 문제, 기후변화 대처 문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관련 문제, 환경보건법 제정 등 그동안 추진한 일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는 비록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는 하나 실정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는 지난 17년간 환경부에서 본부 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 등의 주요 직책을 원만하게 수행하였고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안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결산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이 의결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16시30분)

○**부의장 이상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대통령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가 아니라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도곡동 땅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징역형감입니다. 도곡동 땅 제3자는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29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은 특가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하는 무거운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 실제 소유자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31일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검찰 수사상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도 검찰도 이명박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높으니까 검찰이 잠재적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후보를 직접 소환 수사하지도 않고 있고 사건은 현재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은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짓밟은 중대한 반사회적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상은 씨와 이명박 후보의 재산관리인 등 핵심 인물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조세 포탈 혐의를 방조하고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 비리 혐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당사자는 이명박 후보입니다.

또한 BBK 주가 조작 및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만도 1000억이 넘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소액 투자자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건입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액 투자자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의 한가운데 핵심 당사자도 이명박 후보가 있습니다. 이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 자료들과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함께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경준도 한국으로의 송환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와 조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이에 따른 조세 포탈 범죄 혐의 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이명박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검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의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중대했으면, 오죽했으면 이명박 특검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이명박 후보 범죄·비리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검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충분한 이렇게 중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은 이러한 중대한 의혹과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고 이명박 후보가 중대한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더구나 책임 있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두건의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김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장내 소란)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중률 의원께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하셨는데요. 국세청과 국정원 그리고 많은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집요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는 전혀 무관함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실들, 과거 완료형의 문제를 지금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꼭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 발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정아 씨가 지난 9월 9일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 참으로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언론과 국민들께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

니다. 적어도 변양균 실장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든지 혹은 변양균 실장과 같은 권력의 다수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30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신정아 씨의 단순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또 있습니다.

불교계의 장운 스님 한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통이 따로 있고 변 실장은 겨우 깃털인데 불교계를 도와준 깃털만 지금 다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장운 스님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또한 변 실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신정아 씨 본인의 이 발언 한마디로 우리는 실제로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스캔들에 따른 직권 남용, 이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아 씨가 “내 배후에는 변양균 씨 정도는 상대가 유(類)가 아니다. 더 큰 세력이 있다. 배후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05년 동국대학 특채 교수 임용, 교육부의 동국대 특성화사업 선정, 비엔날레, 정부 부처 미술품 구입,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권양숙 여사의 변양균 전 실장 부인과의 청와대 오찬, 거기서 윗선은 없다…… 오히려 윗선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결국 신정아 씨는 지난번 청와대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신정아 씨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다는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변 실장이 신정아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거짓 브리핑까지 하는 등 변 실장과 신정아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소설 같다. 낚남도 안 되는 의혹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은 단순한 스캔들에 따른 직권 남용의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변양균 뒤에 있는 그보

다 더 큰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의원** 대전 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오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마는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 차례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규용 장관후보자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두둔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고위공직자의 탈법과 불법행위에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둘러싸고 스스로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야합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청와대의 무원칙을 지적합니다.

둘째, 위장전입의 대표선수, 위장전입의 챔피언인 이명박 후보의 원죄를 덮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오히려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변색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셋째,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시각,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행정·사법·입법부 고위공직자의 인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해도, 위장전입 한 건만 해도, 부동산 상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2002년 7월 29일 장상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기가 어쨌든 거기에서 안 살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위장전입이다. 투기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 목적 여하를 놔두고 그것은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이 바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심재철 의원,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발언을 심재

철 의원이 해야 됩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추상 같았던 그 심재철 의원이 그 까칠한 마우스에 생 고구마를 왜 물었습니까?

수구보수언론들은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속이나 하듯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중앙일보 6월 18일자 사설에서 장상 국무총리는 이명박 후보자와는 다르다, 땅 투기 의혹, 자택 불법개조, 학력 허위 기재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이 겹쳐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장상 서리와 이명박 후보는 진짜 다릅니다. 도곡동 땅 의혹, BBK 사건, AIG 사건, 삼암동 DMC 의혹, LK뱅크 문제, 이런 의혹 저런 의혹, 작은 의혹 큰 의혹, 전과가 14범, 17범 된다고 하는 전과 사실과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후보를 두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법사실도 같이 두둔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버리고 호불호를 따라 국민의 눈과 귀를 혼드는 언론에도 역사의 평가는 비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밝힙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규용 환경부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든 상위직 공직자의 위장전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의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김중률 의원하고 우리 선병렬 의원께서 죽어가는 불씨를 되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좀 처량해 보입니다. 돌아가셔서 손학규 지사나 좀 붙잡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유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성립되어 있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활동을 한 두 달 반쯤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수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 연유를 한번 곱씹어 보면, 지난번 7월 24일에 법안심사1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도 이끌어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력후보자가 테러로 인해서 사망했

을 경우에 선거를 한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도 많고 또 프랑스 입법에 따라서, 뭐 정쟁과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규정을 둬서 테러를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테러를 기도하는 세력들이 테러에 성공하더라도 선거가 연기되어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테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의해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수개표 문제입니다.

지난번 2002년 대선도 수개표였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서 전산기계, 전산조직, 전자기계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선거법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도 지난 2002년 선거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날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의해서 표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뭐 대통합신당입니까, 대통합신당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회의에조차도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의원 정수 조정을 하자는 핑계인데 들어와서 하자 이것입니다. 원내대표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겁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파행을 시키는 것은 우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0월 8일까지는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합의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수 조정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어떤 벌여 놓은 판에서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예를 유력 후보자 테러 시에 연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개표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밖에도 지금 재외국민들의 관심사인 재외국민 투표권 주는 문

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저의 호소를 간곡하게 들으시고 회의에 졸업해서 우리 할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성영 의원님께서 과거와 달리 매우 나긋나긋하게 정치관계법특위를 빨리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또 이번 주에 정치관계법특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리지 못하고 공전이 된 이유는 주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정당별 의석 수에 맞추어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정수 조정에 대해서 특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양 당의, 양 교섭단체의 협의 사항이고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한나라당 원내대표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이 의석 수와 달리 역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위원 정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의 대표분들께서 위원 정수에 대해서 조정만 하시면 바로 정치관계법특위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의 정수 조정에 전혀 무관심하신지, 혹시 그것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이렇게 공전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여러분께 여쭙고 싶

습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 수는 대통합민주신당이 143석, 한나라당이 129석입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7석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 수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한나라당이 9석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죄송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8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은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고 어떠한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당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신 데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주성영 의원님께서 정치관계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논의된 여론 조사 1·2위를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의 유고 시 대통령선거를 연기하자는 그런 개정의견은 분명히 구두 합의된 것이지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테러 피습을 우려한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기계장치, 전산장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조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치관계법특위가 열리면 얼마든지 토론해서 정해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위원 정수 조정 협의를 빨리 마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상득**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신당 인천 출신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반여성 의식을 가진 대권후보, 이대로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이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런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 위법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그 업종에서 벗어나 자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벌이, 인권 착취를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부조차 2007년, 올해 8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퇴폐 마사지 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를 처벌하는데 강화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의 지적대로 현재 성매매로 인해서 미국 등 여러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이 무려 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성매매로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성구매자의 여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강경책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노력 중인데 오히려 일국의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성매매 일종의 하나인 퇴폐 마사지를 잘 즐기는 법을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반여성적인 망언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과 여성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8일 “마사지 곁에 대해서 예쁜 여자보다 안 예쁜 여자를 선택해야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발 마사지사들의 비난과 여성계의 비난이 여전하자 이번에는 “예쁜 여성들은 안 예

쁜 여자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안 예쁜 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기회 균등의 표현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색한 변명으로 다시 한번 여성계와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건전한 여성들을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 이 얘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45년 전 선배의 얘기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외모를 기준으로 했던 이런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45년 전 얘기라고 했는데, 한 번의 망언이 또 한번의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8일 여성의 날 즈음에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여기자 성추행 이후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자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이런 황당한 표현으로 선량한 식당 여주인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 발 마사지사들을 비하하는 핑계를 대서 여성직업훈련교육으로 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박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이명박 후보는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8월에는 ‘관기’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고 비틀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보의 이런 의식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18일까지—바로 얼마 전까지, 두 달 전까지—이 후보가 소유했던 강남 건물 지하에는 ‘섹시클럽’이라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미모의 아가씨 100명 항시 대기, 팁 4만 원”이라는 그런 글귀의 간판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대전, 서울에서는 이런 유흥업소 선불금 때문에 자살한 20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학은 대통령 후보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이명박 후보의 망언은 이 후보의 낮은 여성 의식과 인권 의식을 의심케 합니다. 절감케 합니다.

이제 이 후보는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가적 망신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솔직한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일국의 유력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과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태풍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해를 입은 주민들은 힘겨운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군·경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6일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나리의 공격으로 특히 우리 제주지역은 1923년 이후 기상 관측 84년 역사상 가장 많은 590여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 폭탄으로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제주지역 피해만 살펴보면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한 인명피해와 공공 시설인 도로, 교량, 어항 등 880여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로는 주택 2563동, 차량 1500여 대가 침수되고 420ha의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1만 3510ha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사유시설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현재 침수가속과 농작물 피해조사 등은 소요인력의 부족으로 피해금액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

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에 더하여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만이 아닌 피해가 엄청난 사유 민간시설 피해복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재해피해 신고 및 피해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9월 16일 태풍 나리 발생 이전인 9월 4일부터 제주 동부지역은 며칠간 계속된 극심한 호우로 이미 피해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의 피해에 대한 조사·보고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추석 연휴로 5일간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접수신고 및 보고 기간은 9일 정도로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5일 동안에 읍·면당 3~4명의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수만 필지를 조사·보고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재에 신음하고 보상에 소외되는 이중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에서는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제주지역은 육지부의 논농업지역과 달리 밭농사 위주의 지역이라 배수개선이나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함덕리 사장동의 경우 매년 계속되는 수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 때문에 그 지역의 근본적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허상만·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방문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속했으나 겨우 금년에야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신규사업 자제 입장으로 인해 내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예산지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주택 침수, 농수산물 민간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조기 집행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적시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의 주 구성원인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은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그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재난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378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태풍 나리의 복구로 지방재정이 파탄 상황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을 해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특별교부세 지원율을 100%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54인)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노현송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배기선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	-----	-----	-----

기권 의원(1인)

심재덕
(정형근 의원 착오로 이한구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찬성 의원 154인, 기권 의원 1인 임)

○국가회계법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 홍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석 호 문 희 상 남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영 순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박 병 석 이 상 민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홍 업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학 진 문 희 상 문 회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배 기 선 서 병 수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심 대 평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감 윤 정 동 채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 기 춘 홍 창 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정 훈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노현송	문학진	문희	문희상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재관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서혜석	손봉숙	신명	신상진	노현송	문학진	문희	문희상
심대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엄호성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덕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원희룡	유기준	유재건	유정복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재오	이재용	이재창	이종구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주영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여옥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정문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혜훈
정화원	정희수	조경태	조일현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정두언	정문헌	정세균	정의용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재형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조경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기권 의원(4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김우남	제종길	홍문표	홍창선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선택	권영세

기권 의원(1인)

이재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배기선	배일도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진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최용규

기권 의원(5인)

김형오 서병수 이혜훈 정화원
최연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대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헌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재 완
 박 진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원 영

기권 의원(5인)

김 덕 규 김 홍 업 박 근 혜 박 세 환
 이 계 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홍 업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명 주 박 세 환 안 영 근 천 영 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공 성 진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희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명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김 흥 업 박 세 환 정 화 원 정 희 수
 차 명 진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노현송	문희	문희상	박근혜	김송자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배기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철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남경필	노현송	문희	문희상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박진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재덕
이계안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세균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세균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황우여	황진하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기권 의원(4인)

공성진	김성조	박종근	정화원
-----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기권 의원(1인)

김영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석호	문희석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기선	배일도	서병수
박진기	배기선	배일도	손봉숙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고희선 이계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석호	문희석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진기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진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복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고희선 정화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홍미영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석호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한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석호 문희상 박근혜 박성범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종근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정화원

기권 의원(3인)

고희선 김성곤 홍미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명 신상진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근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병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상배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시종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은영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재창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이진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여옥
 장영달 정갑윤 정동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종률 정두연 홍창선

(강기정 의원 표결기 조작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4인, 기권 의원 3인임)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기권 의원(1인)

제종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선택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윤두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종 석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채 일 병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채 이 계 경
 이 균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종 석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기 남 신 명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기권 의원(2인)

이 재 창 최 연 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창 일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고 희 선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흥 업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정화원 황진하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6인)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김우남	김원용	김재윤	김재홍	강조홍	강진화	강홍길	고희선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김희정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김용갑	김우남	김원용	김재윤
박재완	박진	박형준	박희태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엽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안상수	안택수	양승조	엄호성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박진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이계경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이계경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이낙연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이상배	이석현	이성권	이시종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진수희	진영	채일병	최구식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장영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황우여	황진하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반대 의원(6인)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강기갑	박상돈	이영순	천영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최순영	최용규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기권 의원(2인)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심재덕	안홍준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 建設周邊地域支援等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4인)

박형준 이명규 홍미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호	이혜훈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이주영 임해규 정진섭 차명진

기권 의원(9인)

고경화 김종률 심재덕 유인태
이종구 이진구 제종길 허천
홍준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인)
 박성범 이재오 이주영

기권 의원(6인)
 안상수 이균현 이종구 정갑윤
 정병국 정화원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용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서병수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대년
 김태홍 김학송 김형오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엽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기갑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류근찬 문석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김형오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엄호성 염동연 우윤근 우제항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문현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형근
 조성래 주승용 채일병 최병국 최철국 최인기 최철국
 홍문표 홍창선 홍준표 홍창선

기권 의원(2인)

박상돈 심재철
 (안홍준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79인, 기권 의원 2인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엽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우윤근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연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안민석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기춘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권경석 권영세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12인)

김기춘 김덕룡 김영덕 김재경
 김충환 김형오 배일도 서병수
 이경재 이상배 이인기 정두언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희태 배기선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시중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홍업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성영 진수희 진영
 채일병 천영세 최구식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선교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준표 황진하

기권 의원(9인)
 고희선 김덕룡 김명주 박희태
 유필우 이시종 정갑윤 최병국
 홍창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출석 의원(24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희선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명진 신상진
 신학 심대평 심재택 심재엽

○출장 의원(1인)

이강두

○청가 의원(19인)

강봉균 김광원 김재원 김희선
 노영민 신중식 오제세 유승희
 유시민 이광재 이영호 임인배
 임태희 장향숙 조순형 채수찬
 최성 최재천 한명숙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신 일
통일부장관	이 재 정
행정자치부장관	박 명 재
보건복지부장관	변 재 진
노동부장관	이 상 수
여성가족부장관	장 하 진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 호 영
건설교통부차관	이 춘 희
해양수산부차관	이 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 태 랑
입법차장	민 동 기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보건복지	강기정	대통합 민주신당	2007. 9. 11	
재정경제	문석호		2007. 9. 12	
교육	유기홍			
여성가족	장향숙	한나라당	2007. 9. 13	
	김영숙			
환경노동	제종길	대통합 민주신당	2007. 9. 17	
통일외교통상	이화영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	유필우			
산업자원	최철국			
정무	박상돈			
과학기술 정보통신	유승희			2007. 9. 18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홍미영	제종길	대통합 민주신당	2007. 9. 11
국회운영	장영달	.		비교섭단체 (민주당)
	.	최인기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양형일	정무	교육	대통합 민주신당	2007. 9. 14
김혁규		산업자원		
김태년	산업자원	정무		
정봉주	교육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한길	법제사법	행정자치	대통합 민주신당	2007. 9. 18
이상경		재정경제		
최재천	통일	법제사법		
이해찬	외교통상	환경노동		
한명숙	환경노동	통일외교통상		
김진표				
신명	행정자치	환경노동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관계법 특별	나경원	배일도	한나라당	2007. 9. 18

○의안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광철·우상호·김재윤·윤원호·이미경·정청래·천영세·김형주·김희선·전병헌·이광재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광철·이미경·우상호·김재윤·정청래·신기남·천영세·김희선·전병헌·강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재웅·김무성·이성권·안경률·이재오·이명규·정종복·서병수·김정훈·김병호·박계동·박형준·허태열·박승환·김형오 의원 발의)

9월 1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교육수요자의 지원 및 교육상담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은영·선병렬·김선미·최성·민병두·정성호·이경숙·이목희·양승조·김교홍·조일현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은영·장향숙·선병렬·최순영·김선미·김동철·김영숙·조정식·최성·정성호·김명자·정봉주·이시중·이경숙·양승조·김교홍·조일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홍문표·이인기·김양수·김명

주·김태홍·김태년·정병국·김춘진·이강두·이근현·고조홍·유선호·최규성·신중식·심재철·김낙성 의원 발의)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7. 9. 11 이은영·김선미·김동철·이계경·최성·민병두·김춘진·안영근·조정식·김명자·이목희·조일현·김성곤 의원 발의)

9월 1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청문 요청안

(2007. 9. 11 대통령 제출)

9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박재완·정병국·엄호성·김충환·박세환·배일도·나경원·김정훈·차명진·정문헌·이주호 의원 발의)

9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이강두·정문헌·임인배·홍문표·최구식·이상배·정갑윤·박희태·김영덕·안홍준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정형근·김정권·이성구·정성호·장복심·박세환·신상진·이인기·이영호·문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이시종·노영민·장복심·박상돈·김홍엽·한광원·김선미·홍문표·변재일·신중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오제세·안상수·박상돈·이계경·김종률·우제창·문석호·김부겸·송영길·임종석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정봉주·서갑원·안민석·민병두·최순영·이경숙·백원우·이인영·조정식·김교홍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근현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이근현·허천·이재오·박순자·이명규·박찬숙·최구식·서병수·신상진·장복심·고경화·이계진·임해규·박세환·김정권·김영숙·강길부·맹형규·김명주·이성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2 서상기·곽성문·김석준·김정권·박종근·신상진·안상수·안택수·염동연·유승민·이계경·이명규·이주호·이한구·이해봉·정동채·주성영·주호영·지병문·한선교 의원 발의)

9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物品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3 정부 제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김영주·제종길·임종석·박영선·강길부·우상호·강기정·김동철·조정식·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주호영·김정권·이계경·유기준·신상진·엄호성·김양수·박형준·고조홍·전재희·이성권·정종복·권영세 의원 발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신명·선병렬·홍미영·오영식·김영춘·김부겸·김교홍·김태년·이미경·장향숙·제종길·노웅래·노현송·김덕규·박상돈·김재윤·손봉숙·김성곤·김형주·이경재·윤원호·최순영·배일도·안홍준·박찬석·한명숙·백원우·이경숙·이인영·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주호영·김정권·이계경·유기준·신상진·김양수·박형준·고조홍·전재희·이성권·정종복·권영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영순·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상민·박명광·송영길·문병호·홍미영·윤원호·최규성·서혜석·유승희·정청래·박영선·심재덕·김덕규·노영민·이시중·조정식·김재윤·서갑원 의원 발의)

9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회교육정책협의회법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상경·김재윤·안민석·우윤근·장복심·김영춘·김현미·김재홍·양승조·박영선 의원 발의)

9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상민·박명광·송영길·문병호·홍미영·윤원호·최규성·서혜석·유승희·정청래·박영선·심재덕·김덕규·이석현·노영민·이시중·조정식·김재윤·서갑원 의원 발의)

9월 1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박찬숙·안상수·이성권·이성구·윤건영·김재원·이군현·이계경·고경화·황우여 의원 발의)

9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9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 의원 대표발의)

(2007. 9. 13 이상경·김재윤·안민석·우윤근·장복심·김영춘·김현미·김재홍·양승조·박영선 의원 발의)

9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임인배·최구식·이상배·안홍준·김양수·박형준·정갑윤·김태환·김병

호·정문헌 의원 발의)

9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고경화·김정권·박재완·배일도·신상진·안명옥·이인기·임인배·장복심·정병국·현애자 의원 발의)

葬事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障碍人·老人·妊産婦등의便宜増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軍用電氣通信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신명·홍미영·김영춘·유재건·장영달·송영길·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9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신명·홍미영·김영춘·유재건·장영달·송영길·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백원우·김종률·김형주·서갑원·선병렬·신명·양승조·윤호중·이경숙·이광재·이미경·이석현·정의용·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에 회부

屋外廣告物等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김영춘·정성호·윤호중·이광철·이계경·정갑윤·김정권·박기춘·송영길·백원우·민병두·김성곤·김현미·김교홍·이인영 의원 발의)

대국민 방재안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별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박기춘·장복심·정성호·김정권·최성·노현송·문화상·강창일·심재덕·김영춘·전병헌·김재윤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홍미영·김영춘·이광철·유재건·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9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신명·홍미영·김영춘·유재건·장영달·송영길·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4 정부 제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7404)

(2007. 9. 14 이명규·곽성문·권경석·김석준·김성조·김양수·박재완·이성권·이인기·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선병렬·유재건·홍미영·장영달·송영길·신명·양승조·우제창·김동철·이화영 의원 발의)

家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명규·곽성문·권경석·김석준·김성조·김양수·김정권·박재완·이성권·이인기·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인기·이성권·한선교·신상진·김태환·김영숙·박계동·정진섭·정갑윤·이명규·김정권·고경화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명규·곽성문·권경석·김석준·김성조·김양수·김정권·이경재·이성권·이인기·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이명규·곽성문·권경석·김석준·김성조·김양수·김정권·이경재·이성권·이인기·이재웅·한선교 의원 발의)

9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박병석·신학용·홍문표·선병렬·이상민·심대평·권선택·김영주·김현미·문석호·박상돈·김재홍 의원 발의)

9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7. 9. 14 김교홍·배기선·최용규·홍미영·황우여·민병두·안영근·박찬석·정봉주·이은영·신학용·한광원·송영길·문병호·강성종·안민석·유기홍·이경숙 의원 발의)

9월 17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부
과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7. 9. 17 김재윤·정진석·강창일·안민석·정성호·제종길·강기정·최경환·박상

돈·변재일·유선호·이상민·민병두·엄호성·이시중·신국환·안상수·김성곤 의원 발의)

9월 1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

(2007. 9. 17 고희선·남경필·김정권·최구식·박찬숙·박상돈·이인기·고조흥·신상진·이계진·정종복·임태희·안명옥·정진섭·이병석·이명규·정희수·정화원·유승민 의원 발의)

여성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7. 9. 17 황우여·정성호·김정권·신상진·이원영·박찬숙·고조흥·안상수·엄호성·이경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7. 9. 17 이경숙·이미경·민병두·최재성·이목희·안민석·김원기·유기홍·김교홍·박찬석·정봉주·문학진 의원 발의)

9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7 정부 제출)

9월 1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7. 9. 17 안명옥·이한구·김애실·배일도·유기준·박찬숙·이계경·문희·임인배·황우여·김석준 의원 발의)

9월 1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7 정부 제출)

9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2007. 9. 18 유인태·최연희·윤호중·이인영·권경석·김명자·최규식·심재덕·김낙순·김근태·문희상·김부겸·강창일·박기춘·노현송·김영춘·임종석·배기선·홍미영·한병도·김원기·정두언·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

원 대표발의)

(2007. 9. 18 정진석·이용희·권오을·홍재형·김낙성·이낙연·심대평·정희수·이성권·류근찬·권선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8 오영식·장영달·한병도·정청래·서갑원·우제항·김희선·정장선·유필우·노영민·최철국·유승희 의원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8 오영식·장영달·한병도·정청래·서갑원·우제항·김희선·정장선·유필우·노영민·최철국·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9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8 정부 제출)

9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

(2007. 9. 18 이시중·노영민·한광원·박성범·안홍준·김양수·김명주·최철국·김덕규·신중식·김부겸·이성권 의원 발의)

9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안민석·김재윤·정봉주·서갑원·이상경·강기정·김교홍·이경숙·문병호·유기홍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김원웅·강창일·김재윤·정의용·김영춘·임종석·정성호·남경필·김태홍·노영민·이광철·서갑원 의원 발의)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정청래·정성호·우상호·임종인·김재윤·김희선·윤원호·박기춘·이광철·유선호·이미경·전병헌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우상호·이광철·이미경·정병국·정청래·전병헌·김영주·이인영·김교홍·조성래·이목희·윤호중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정화원·손봉숙·엄호성·신상진·김정권·고조흥·이계경·정종복·남경필·김명주·배일도 의원 발의)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정청래·이광철·노웅래·장복심·정성호·우상호·임종인·김재윤·김희선·윤원호·유선호·이미경·전병헌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최철국·노영민·조성래·이광재·배일도·우제항·주승용·조정식·이상배·이시중 의원 발의)

9월 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김정권·신상진·정갑윤·이인기·김학송·김석준·이계진·이성권·이계경·박세환·김명주·이명규·김양수·김애실·한선교 의원 발의)

9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한병도·정세균·최규성·정장선·최재성·주승용·이광재·김태년·서갑원·김선미 의원 발의)

9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港灣運送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9. 19 정부 제출)

9월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고액화폐권 여성초상인물 선정요청에 관한 건의안

(2007. 9. 19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9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임종석·강기정·배기선·장영달·정의용·김원웅·이인영·김교홍·김근태·유인태·이광철·강창일·김부겸·최성·노영민·이화영·유선호·김재윤 의원 발의)

9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기상산업진흥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7. 9. 19 정부 제출)

이상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9. 20 교육위원장 제출)

천일만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김삼웅) 선출안

(2007. 9. 20 의장 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7. 9. 20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7. 9. 2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9. 20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안

(2007. 9. 2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07. 9. 20 의장 제의)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16일간)

○의안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

(2007. 5. 23 김혁규·강길부·권선택·김계홍·김종률·김우남·박찬석·오제세·윤원호·이시중·장복심·정갑윤·조경태·최철국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회계법안

(2006. 12. 27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2007. 5. 18 정부 제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2007. 4. 9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2007. 5. 15 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

(원안대로 의결)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11 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11 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구논회 의원 대표 발의)

(2005. 6. 28 구논회·신기남·이강래·지병문·정봉주·박병석·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백원우·선병렬·김춘진·강기정·주승용·최순영·장영달·현애자·이영순·권영길·천영세·김태년·최재성·조승수·이광철·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균현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10 이균현·이해봉·김명주·김학

송·박세환·이인기·정성호·정갑윤·서재관·안상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

(2006. 12. 11 김교홍·안상수·박찬석·최순영·박명광·정봉주·민병두·장복심·이경숙·황우여·한광원·이은영·지병문·유기홍·정장선·김영춘·최재성·안민석·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교육위원장 보고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 정부 제출)

한의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2 정부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김애실·이강두·이재웅·진영·김기현·윤건영·유기준·정희수·정화원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4 안명옥·고진화·김석준·김영숙·김정훈·김희정·곽성문·이계경·문희·정의화 의원 발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5. 9. 16 김춘진 · 엄호성 · 박명광 · 유승민 · 이인기 · 이해봉 · 이영호 · 김태홍 · 안민석 · 안상수 · 배일도 · 강창일 · 박세환 · 최경환 · 박상돈 · 김명주 · 김재홍 · 박찬숙 · 김재경 · 심재덕 · 우제창 · 이강두 · 공성진 · 이강래 · 김영덕 · 이낙연 · 장영달 · 최인기 · 이호웅 · 신상진 · 김효석 · 유선호 · 주승용 · 신국환 · 김영선 · 염동연 · 이계진 · 변재일 · 김성곤 · 한화갑 · 고조홍 · 김재원 · 한병도 · 한선교 · 강기정 · 김무성 · 최용규 · 이상배 · 조정태 · 조배숙 · 정희수 · 최규성 · 최구식 · 최재성 · 정종복 · 임인배 · 권오을 · 조승수 · 김정권 · 이병석 · 이인제 · 신중식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3 정형근 · 김재원 · 박세환 · 권영세 · 유승민 · 이해훈 · 이인기 · 나경원 · 엄호성 · 임해규 · 노현송 · 심재철 · 안상수 · 안정률 · 정진섭 · 고조홍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2 양승조 · 박명광 · 정동채 · 우제창 · 이해봉 · 김종률 · 김동철 · 박상돈 · 이종걸 · 김재홍 · 김재윤 · 변재일 · 김태년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6. 4 강기정 · 백원우 · 김효석 · 지병문 · 김동철 · 강창일 · 이기우 · 장복심 · 김현미 · 김선미 · 홍미영 · 장향숙 · 이목희 · 양형일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 · 고진화 · 김석준 · 김영숙 · 김정훈 · 김희정 · 광성문 · 이계경 · 문희 · 정의화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5. 11. 7 이성구 · 강창일 · 고조홍 · 권경석 · 김재원 · 박계동 · 박세환 · 신학용 · 심재덕 · 심재철 · 안상수 · 유기준 · 이상경 · 이재오 · 이해봉 · 정문현 · 홍준표 · 황진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4 안명옥 · 김애실 · 이강두 · 이재웅 · 진영 · 김기현 · 윤건영 · 유기준 · 정희수 · 정화원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06. 8. 2 이석현 · 김진표 · 김선미 · 김춘진 · 구노희 · 우제창 · 문학진 · 장향숙 · 김덕규 · 백원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0. 9 장향숙 · 김재홍 · 이해봉 · 김종률 · 문병호 · 김선미 · 정동채 · 맹형규 · 이기우 · 우원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4 문병호 · 임종인 · 김종률 · 안병엽 · 정성호 · 한광원 · 이인기 · 박재완 · 장향숙 · 강창일 · 장복심 · 우윤근 · 이종길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이규용) 인사청문 요청안

(2007. 9. 11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2007. 5. 16 유필우 · 장복심 · 신학용 · 한광원 · 원혜영 · 김정권 · 김교홍 · 정장선 · 박상돈 · 강길부 · 변재일 · 신국환 · 문석호 · 주승용 · 양형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07. 4. 13 안홍준 · 고조홍 · 김광원 · 김명주 · 김용갑 · 김우남 · 김재경 · 김충환 · 신상진 · 안상수 · 안영근 · 엄호성 · 윤두환 · 이상배 · 이인기 · 이주영 · 이진구 · 임인배 · 정의화 · 정희수 · 차명진 · 황진하 · 허천 · 허태열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임인배 · 주성영 · 이해봉 · 엄호성 · 김태환 · 광성문 · 유승희 · 이인기 · 안병엽 · 김성조 · 공성진 · 이계경 · 김광원 · 이상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2007. 4. 27 서재관 · 양형일 · 우제창 · 변재일 · 이종걸 · 이근식 · 장복심 · 조일현 · 박상돈 · 노현송 · 이영순 · 유선호 · 최규식 · 주승용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7. 4. 24 최인기 · 김정권 · 문학진 · 최규성 · 유승민 · 최병국 · 김재운 · 채일병 · 정의화 · 이낙연 · 주성영 · 김종률 · 김효석 · 이계경 · 박상돈 · 오제세 · 유선호 · 고조홍 · 손봉숙 · 채수찬 · 임인배 · 김형오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30 정부 제출)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7. 5. 1 윤두환 · 이진구 · 허천 · 고흥길 · 김영덕 · 차명진 · 조일현 · 김태환 · 정희수 · 진영 · 고희선 · 김석준 · 김재경 · 유정복 · 최구식 · 박승환 · 이인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6. 8. 31 이미경 · 구논희 · 이영호 · 정성호 · 황우여 · 노현송 · 김태년 · 엄호성 · 이계안 · 민병두 · 강혜숙 · 우제창 · 정두언 · 정동채 · 박상돈 · 홍미영 · 윤원호 · 김재홍 · 이광철 · 이경숙 · 박명광 · 우상호 · 김재운 · 우윤근 · 장향숙 · 문석호 · 김영주 · 양형일 · 신기남 · 최재성 · 안영근 · 유승희 · 오제세 · 김형주 · 강성종 · 이원영 · 심재덕 · 정의용 · 배기선 · 유재건 · 김희선 · 김종률 · 김현미 · 최병국 · 박기춘 · 신학용 · 강기정 · 송영길 · 이근식 · 장경수 · 정장선 · 이강래 · 주승용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5 이낙연 · 고조홍 · 김송자 · 김효석 · 박재완 · 서재관 · 신중식 · 이상열 · 이인기 · 이인영 · 전병헌 · 정성호 · 정진석 · 채일병 · 최인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이종걸 · 최인기 · 엄호성 · 신상진 · 최성 · 이해봉 · 김태년 · 노현송 · 이영호 · 고조홍 · 유재건 · 안상수 · 심재덕 · 이석현 · 변재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7. 3. 20 박상돈 · 강길부 · 우제항 · 변재일 · 양승조 · 신학용 · 이종걸 · 최규식 · 김태년 · 서재관 · 장복심 · 주승용 · 염동연 의원 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06. 8. 24 홍문표 · 이인기 · 이해봉 · 정화원 · 이강두 · 신상진 · 강기갑 · 김명주 · 안영근 · 엄호성 · 김영덕 · 정문헌 · 안병엽 · 유승민 · 이방호 · 김우남 · 김광원 · 조일현 · 김낙성 · 김태년 · 신중식 · 이상배 의원 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6. 9. 1 우윤근 · 주승용 · 노영민 · 우원식 · 김낙순 · 선병렬 · 우제항 · 조일현 · 장향숙 · 신중식 · 유선호 · 한광원 · 한화갑 의원 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정희수 · 강길부 · 배일도 · 이인기 · 김석준 · 박재완 · 이한구 · 김태환 · 김성조 · 정갑윤 · 임태희 · 유승민 · 고조홍 · 김애실 의원 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7. 4. 19 김춘진 · 최인기 · 김효석 · 우제창 · 신상진 · 이광철 · 정성호 · 안상수 · 홍문표 · 이강두 · 김성곤 · 정의용 · 김태홍 · 최연희 · 김정훈 · 정몽준 · 김태환 · 이상민 · 문석호 · 장영달 · 김낙성 · 최철국 · 김동철 · 이영호 · 노영민 · 오제세 · 최재성 · 조성래 · 이상배 · 김기춘 · 이계경 · 서갑원 · 한병도 · 양형일 · 이영순 · 강기갑 · 신국환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6. 9. 18 정장선 · 김교홍 · 문학진 · 박상돈 · 서재관 · 유필우 · 정성호 · 주승용 · 한병도 · 홍재형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6. 9. 29 허태열 · 김종률 · 김무성 · 이해봉 · 박상돈 · 신상진 · 이인기 · 황우여 · 김정훈 · 이성권 · 안경률 · 고조홍 · 서병수 · 엄호성 · 정형근 · 안상수 · 김희정 · 박재완 의원 발의)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7. 14 박상돈 · 강혜숙 · 구논희 · 김동철 · 김종률 · 심재덕 · 양승조 · 오제세 · 이시중 · 이해봉 · 정문헌 · 정성호 · 정장선 · 주승용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6 허태열 · 박세환 · 이인기 · 이성권 · 김명주 · 박형준 · 서상기 · 김학송 · 김영선 · 박재완 · 김태환 · 이명규 · 이계경 · 김정훈 · 김양수 · 심재엽 · 박승환 · 안홍준 · 이해봉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4. 11 정부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2007. 4. 20 이재창 · 고조흥 · 김정권 · 김재원 · 김재윤 · 박상돈 · 신국환 · 신상진 · 안경률 · 안상수 · 안택수 · 이계경 · 이성권 · 이인기 · 정갑윤 · 정문헌 · 정성호 · 정의화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7. 6. 7 김양수 · 정갑윤 · 이계경 · 정화원 · 신상진 · 최구식 · 안홍준 · 유기준 · 김기현 · 김명주 의원 발의)

(이상 1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7. 6. 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홍미영 · 장향숙 · 정진석 · 김태년 · 고조흥 · 유승희 · 윤원호 · 김영주 · 서갑원 · 조배숙 · 강기정 · 박영선 의원 발의)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7. 6. 4 손봉숙 · 이광철 · 김정권 · 김희

선 · 이경재 · 진수희 · 김영주 · 박상돈 · 유재건 · 김명자 · 김애실 · 정화원 · 박찬숙 · 노현송 의원 발의)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6. 4. 11 심재철 · 안상수 · 김영덕 · 이계경 · 김재원 · 전여옥 · 엄호성 · 신상진 · 고조흥 · 이인기 · 황우여 의원 발의)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6. 8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UCLA 한국음악과 긴급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2007. 9. 11 7320 Coventry Circle, Buena Park, CA, 90621 USA 김동석 외 5인으로부터 이윤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2007. 9. 13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황도수 외 2인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태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2007. 9. 14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60 노진용 외 2만 9459인으로부터 문석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의병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2007. 9. 18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 김채용 외 1만 1812인으로부터 이주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심사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06. 5. 4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9-95 수연 B/D 5층 전국주택조합연합회 대표 문현식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주택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9. 19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대표 박상중으로부터 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조

속처리에 관한 청원

(2006. 11. 10 충북 제천시 청전동 두진백로 아파트 201동 105호 윤성종·남성룡으로부터 이주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3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의 상호관리환 및 이전에 관한 질문서

(2007. 9. 6 권영세 의원 제출)

사립학교 건강보험료에 관한 질문서

(2007. 9. 10 장향숙 의원 제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07. 9. 19 변재일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정기국회 대비 통일부의 자료제출에 관한 질문서

(2007. 8. 29 이해봉 의원 제출)

9월 7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5개 국제전화사업자들의 시장규모 및 매출액에 관한 질문서

(2007. 8. 21 김영주 의원 제출)

9월 19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복약지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9. 17 정부 제출)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의 상호관리환 및 이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9.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07년도 연차보고서

(2006. 9.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